

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안내

'21.6.8.(화) / 스포츠윤리센터

□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근거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른 신설조항(제18조의13제④항) 이행

<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> (법률 제17580호, '21.6.9. 시행)

④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(재계약을 포함한다)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□ 발급조항 대응 계획

- 징계정보시스템 개시('22년 하반기 예정) 전까지 수기 확인서 발급
 -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2681호(2021.6.3./국민체육진흥법 개정)에 따른 징계 이력 발급 확인 협조요청

□ 발급/신청 방법

- (발급주체) 스포츠윤리센터(msbg@k-sec.or.kr / 문의: 02-6220-1327~1329)
- (발급대상) '21.6.9. 이후 게시된 채용공고를 통해 체육회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(최종합격, 재계약 포함)체육지도자

<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>
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(이하 이 조에서 "체육회등"이라 한다)에 소속된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- (조회정보)

| 개인 정보 | 소속 정보 | 징계 정보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연락처, 주소(선택사항) | 이전/현재 소속단체(팀) | 징계기관, 징계양정(징계기간, 징계종류), 위반행위(선택사항, 범죄경력자료 제외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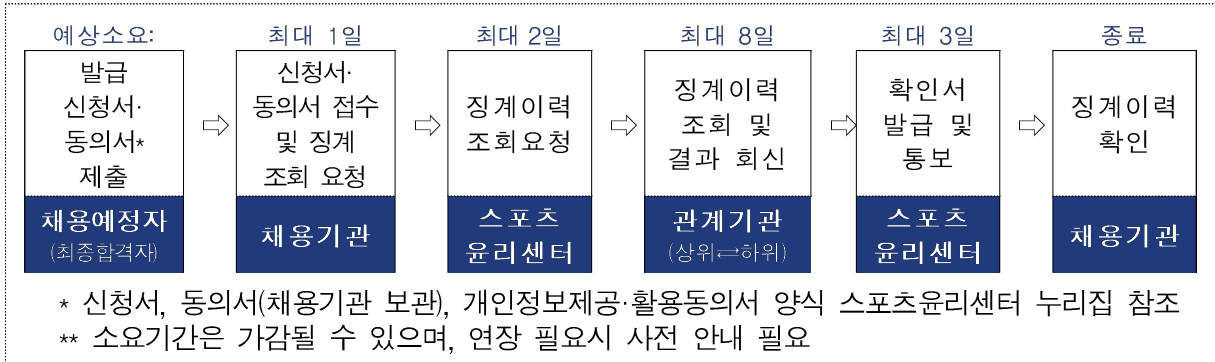
- (신청방법)

- [신청주체] 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기관
- [요청방법] 발급요청 공문 발송(채용기관→스포츠윤리센터)

· LDAP(전자문서)을 이용하실 경우, 문서24 등록기관 중 스포츠윤리센터로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.
· 전자우편(msbg@k-sec.or.kr)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으며, 모사전송(FAX)은 사용하지 않습니다.
* 전자우편으로 공문을 보내주신 경우 전화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.
· 요청공문 내에 요청 담당자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정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.

- [첨부서류] 최종합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발급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
*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(<https://www.k-sec.or.kr>) 서식자료실 내 양식 게시 예정(6.9~)

- (확인서 적용) 발급된 확인서는 각 채용기관·단체의 채용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·규칙 등에 따라 적용
- (발급절차) 최대 14일 소요(예상)



□ 기타 권고사항

- 위반행위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, 신청서에 ‘위반행위’를 체크하여 주시고,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를 수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(변동사항)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(www.k-sec.or.kr) 공지사항에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을 게시할 예정이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(체육지도자 채용 공고시 권고사항)
 - 체육 관련 모든 이력을 기재하도록 안내
 - 징계사실유무확인서 활용계획 공고문 내 기재
 - * 징계 양정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기준 명시
 - * 경력기재 누락으로 징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조치기준 명시 등
 - 신청, 조회, 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전형계획 수립
- (협조 및 홍보 요청) 소속, 산하, 유관 기관·단체 등에 배포자료 적극 홍보 요청
- (보안 철저)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관련 자료, 문서보안 철저
 - *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용도 외 사용 금지, 채용예정자 외 제3자 전달 금지 등
- (보관 기간) 행정문서 등 최대 3년 보관(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)
- (징계등록 철저) 각 기관 징계 발생 시 등록 철저 요청

<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(과태료) >

- ①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제 호

징계사실유무확인서 - 누리집 서식자료를 확인하시어 사용해 주십시오

성 명 :

성 별 :

생년월일 :

징계이력 유무 :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

< 징계 이력 >

| | | |
|-----|---|--|
| (1) | 징계기관 : 000000 징계종류 : 경징계(견책, 감봉), 중징계(출전정지, 자격정지, 해임...)... 위반행위 :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폭행, 성폭력, 횡령, 배임, 직권남용... (근거 : 00000000규정 제27조) | 징계기간 : 2018.3.4.~2020.3.3 징계당시 직위 : 선수, 심판... |
| (2) | (이하 생략, 내용 없을 시 공란 처리 또는 이력 추가) | |
| (3) | (이하 생략) | |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시행령 제44조제3항, 시행규칙 제30조의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

직인

국민체육진흥법(법률 제17580호, 2020.12.8. 일부개정, 2021.6.9. 시행)

제18조의13(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(이하 이 조에서 “체육회등”이라 한다)에 소속된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8.>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(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)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체육회등의 장(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제4항에서 같다)은 소속된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12. 8.>

④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(재계약을 포함한다)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12. 8.>

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,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8.>

제55조(과태료) ①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20. 8. 18., 2020. 12. 8.>

...중략..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1516호, 2021.3.2. 개정·시행)

제44조(권한의 위탁 등) ...중략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(이하 “스포츠윤리센터”라 한다)에 위탁한다. ...중략

2. 법 제18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자료의 요청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(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0호, 2021.2.19. 개정·시행)

- 제30조의5(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3 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, 보유·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.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체육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(이하 “징계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.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이 본인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.